

4. 都市基本計劃樹立指針 改正

資料提供：建設部

건설부는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도시계획법 제10조의2)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 UR타결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주 요 내 용

첫째,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을 시의 도시를 위주로 수립하고 읍의도시 및 기타도시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 하였음(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현황 : 별첨 #1)

둘째,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전체에 대한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의 행정 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토록 유도하되 기본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존의 제한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구역 비교 : 별첨 #2)

셋째, 내년부터 발족되는 33개 도농통합형태의 시는 이미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관할영역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음.

- 가급적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구역을 일치시켜 행정 및 도시개발에 대한 관할 구역을 일원화하도록 유도함.
- 현재의 취락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도록 함.
- 도농통합기능발휘를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환경개선 정비방향을 제시도록 함.
- 특히, 기존시가지와 농어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계획을 수립도록 하였음.

넷째,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제시된 지역균형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도시 중점육성을 위하여

- 도시별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우위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육성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경관계획, 환경계획 등을 아울러 수립도록 하였음.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이 물리적 측면으로 경직되게 운용되어 사소한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탄력적인 도시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개념적 성격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라

- 기본계획상의 각종 도면은 개념적 형태로만 표시하고
- 학교, 운동장 등과 같이 점으로 표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시에 위치가 확정되도록 기본구상도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 공원, 유원지 등과 같이 면적으로 표시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개략적으로 표기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토록 하였음.

(별첨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현황

시·도별	대상 도시수	시 급		읍 급		면 급		비고
계 (74시 178읍 1,257면)	87 (547)	70 (70)		12 (167)		5 (310)		
특별시 (1시)	1 (1)	1 (1)	서울	-		-		
직할시 (5시)	5 (5)	5 (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		-		
경기 (19시 25읍 153면)	16 (95)	15 (15)	수원, 동두천, 성남, 의정부, 송탄, 광명, 부천, 평택, 구 리, 안양, 안산(반월), 하남 (신장), 오산, 과천, 고양	1 (24)	이천	- (56)		시흥→ 반월 의왕· 군포→ 안양 미금→ 구리
강원 (7시, 22읍 97면)	9 (56)	7 (7)	춘천, 강릉, 태백, 속초, 원 주, 동해, 삼척	1 (20)	영월	1 (29)	횡계	
충북 (3시, 10읍 93면)	4 (46)	3 (3)	청주, 충주, 제천	- (10)		1 (33)	수안보	
충남 (5시, 21읍 148면)	11 (50)	5 (5)	천안, 대천, 온양, 서산, 공 주	5 (19)	홍성 장항 논산 예산 대산	1 (26)	도고	

시·도별	대상 도시수	시 급		읍 급		면 급		비고
전북 (6시, 12읍 147면)	6 (53)	6 (6)	전주, 남원, 군산, 이리, 정 주, 김제	— (11)		— (36)		
전남 (6시, 29읍 200면)	8 (87)	6 (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여 천, 동광양	2 (28)	광양 강진	— (53)		
경북 (10시, 32읍 215면)	12 (79)	10 (10)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 미, 영주, 영천, 점촌, 상주, 경산	1 (28)	왜관	1 (41)	온정	
경남 (10시, 20읍 199면)	13 (63)	10 (10)	창원, 마산, 울산, 진해, 충 무, 삼천포, 김해, 진주, 장 승포, 밀양	2 (20)	거창 양산	1 (33)	부곡	
제주 (2시, 7읍 5면)	2 (12)	2 (2)	제주, 서귀포	— (7)		— (3)		

※ 1. ()는 도시계획 수립 도시수임.

2. 타도시계획 편입 : 시급 4, 읍급 11개 도시

(별첨 #2)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구역 비교

◦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 대상도시 : 87개

– 70시(74개시중 4개시는 타지역에 포함)

 ※ 의왕 · 군포 → 안양, 미금 → 구리, 시흥 → 반월

– 12읍(이천, 영월, 홍성, 장항, 논산, 예산, 대산, 강진, 광양, 왜관, 거창, 양산)

– 5면(수안보, 도고, 온정, 부곡, 횡계)

- 수립도시 : 80개도시(고양, 하남, 안산동 3개도시 미수립)

◦ 도시기본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도시(8개 도시)

부천, 송탄, 파천, 평택, 천안, 공주, 온양, 서산

◦ 도시기본계획구역이 행정구역보다 큰 도시(37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동두천, 구리, 춘천, 원주, 청주, 대천, 전주, 군산, 남원,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여천, 동광양,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창원, 울산, 마산, 진주, 충무, 삼천포, 김해, 장승포

◦ 도시기본계획구역이 행정구역보다 작은 도시(22개 도시)

광명, 오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충주, 제천, 이리, 정주, 김제,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점촌, 진해, 밀양, 제주, 서귀포

◦ 미수립 도시(3개)

반월(안산), 하남, 고양

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